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8. 10. 24.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8년 10월 8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제27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소방위원회(2008. 10. 22)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곽임근)

1. 제안이유

-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 : 충북과학대학 → 충북도립대학

- 대학 설립 주체를 명시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북과학대학」에서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 변경

나. 타조례 개정 :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외 2건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전문위원 운영창)

1. 개정개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도립대학인 “충북과학대학”의 교명을 “충북도립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대학설립주체를 교명에 명시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2. 충북과학대학 연혁

현 충북과학대학의 전신인 “도립 옥천전문대학”은 1997년 11월 27일, 대학설립인가를 받고 1998년 3월 6일 개교하였음.

이후 2000년 2월 22일, 제1회 학위수여식을 통해 134명의 학사를 배출한 이래 매년 200~300여명의 지역인재를 배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해왔으며, 현재의 교명인 “충북과학대학”은 2000년 5월 20일부터 사용해 왔음.

※ 붙임자료 1(대학연혁) 참조

3. 검토의견

대학설립주체를 교명에 명시하여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많은 도민들과 학생들에게 도립대학으로서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제273회 정례회에서 도의회의 동의(2008.7.21)를 받아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2008.8.19)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이견이 없음.

※ 참고자료

교명변경 추진과정

- 교무위원회 심의 의결 : 2008. 6. 18
- 교명 변경계획 도지사 결재 : 2008. 6. 26
- 도의회 교명변경 동의안 의결 : 2008. 7. 21
- 교육과학기술부 교명변경 인가신청 : 2008. 7. 28
- 교육과학기술부 교명변경 인가 : 2008. 8. 1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북과학대학 주요 연혁
3. 충북과학대학 기구 및 인력현황.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 제목 및 제15조제1항 중 “충북과학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제1조 및 제4조제3항 중 “충북과학대학”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제5조 및 별표4 위임대상기관란 중 “충북과학대학장”을 각각 “충북도립대학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나목 중 “충북과학대학”을 “충북도립대학”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직속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u>충북과학대학</u></p> <p>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u>충북과학대학</u>(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직속기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u>충북도립대학</u></p> <p>제15조(설치)①----- ----- ----- ----- -----<u>충북도립대학</u>----- -----.</p> <p>②(현행과 같음)</p>

□ 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충북과학대학</u>(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4조(구성)① ~ ②(생략)</p> <p>③당연직위원은 <u>충청북도정책관리실장</u>, <u>옥천구수</u> 및 <u>충북과학대학 교학과장</u>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u>충청북도의회의원</u>과 대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위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①-----<u>충북도립대학</u>----- ----- -----.</p> <p>제4조(구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u>충북도립대학</u>----- ----- ----- -----.</p>

□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생략)</p> <p>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2(생략)</p> <p>3. 교육사회위원회</p> <p>가. (생략)</p> <p>나. <u>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u> <u>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u></p> <p>다. (생략)</p> <p>4.~5.(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현행과 같음)</p> <p>②-----.</p> <p>(현행과 같음)</p> <p>3. -----</p> <p>(현행과 같음)</p> <p>나. <u>충북도립대학, -----</u> <u>-----</u></p> <p>(현행과 같음)</p> <p>(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지방공립대학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이하 "지방공립대학"이라 한다)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학생처·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 전문대학에 사무국(인천전문대학에 한한다)·교무과·학생과와 서무과 등을 둘 수 있다.

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⑤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학생수·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제1항의 교원 확보기준과 다른 국·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총장·학장
2. 교수·부교수·조교수나 전임강사
3. 조교

충북과학대학 연혁

- 94. 12 **공립전문대학 설립의견 요청 (교육부→도)**
 - 기존 공립고등학교 개편을 전제로 시설비 120억원과
향후 5년간 운영비 30억 지원 → 12. 05일

- 95. 02 **「옥천공립전문대학」 설립 계획(안)**
 도의회 의견 청취 (2.24)
 - 청취결과 : 충청북도의회 제1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결과 설립 찬성의견 표명

- 95. 03 **설립의견 제출(교육부)**

- 96. 10 **공립대학 설치승인(10개학과 400명) < 내무부 >**

- 97. 07 **대학 설치 조례 제정**
 - 의회의결 → 5. 29, 공포 → 7. 04

- 97. 07 **대학설립 인가 신청 8개학과 640명(교육부 7. 25)**

- 97. 07 **대학사무기구 및 정원조례 · 직제 규칙 제개정 공포**
 - 의회의결 → 7. 19, 공포 → 8. 1

- 97. 11 **대학 설립 인가**
 - 인 가 일 → 11. 27
 - 내 용 → 8개 학과 320명

- 98. 01 **초대 김광홍 학장 취임**
 - 일 시 → 98. 1. 5

- 98. 01 **98년도 신입생 입시 전형**
 - 모 집 → 8개학과 320명

- 98. 03 **대학 개교 및 입학식(03.06) → 8개학과 328명**

- 00. 05 **교명변경**
 - 옥천전문대학 → 충북과학대학(05.20)
 - ※ 개교기념일

- 00. 10 **입학정원 증원·증과 및 학과명 변경인가(10.06)**
 교육부
 - 입학정원 480명 → 520명(40명 증원)
 - 전자상거래과(40명), 생명정보과(40명) 신설
 - 기계과 → 정밀기계과
 - 전기과 → 에너지시스템과
 - 환경공업과 → 환경생명과학과
 - 전자과 → 전자정보과
 - 식품공학과 → 식품생명과학과

- 01. 10 **2002학년도 입학정원증원 및 학과명칭 변경인가**
 520명 → 550명(10.20)
 - 정밀기계과(40) → 기계과(60)
 - 에너지시스템과(40) → 전기에너지시스템과(60)
 - 시각정보디자인과 → 디지털디자인과
 - 컴퓨터정보과 → 컴퓨터정보과학과
 -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학과

- 02. 01 **제2대 이진영 학장취임(01.10)**

- 02. 10 **2003학년도 학과명 변경인가(10.10)**
 - 기계과 → 컴퓨터응용기계과

- 생명정보과 → 바이오생명정보과

○ 04. 10 2005학년도 학과신설 및 학과명 변경 인가(10.07)

- 학과신설 : 인터넷경영정보과 40명
- 학과명변경인가
 - 컴퓨터응용기계과 → 기계자동차과
 - 컴퓨터정보과학과 → 컴퓨터미디어정보과

○ 06. 01 제3대 안재현 학장 취임(0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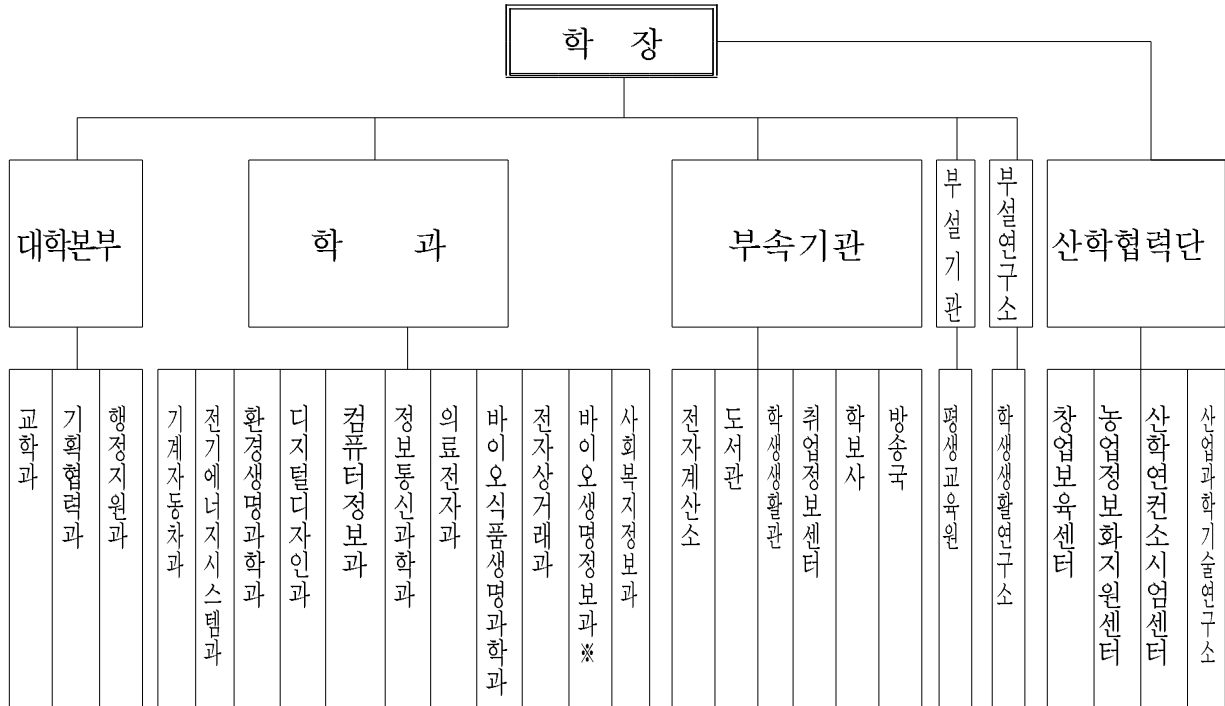
○ 06. 10 2007학년도 학제 및 학과명 변경

- 학과명 변경 : 3개과
 - 바이오일렉트로닉스과 → 의료전자과
 - 컴퓨터미디어정보과 → 컴퓨터정보과
 - 인터넷경영정보과 → 사회복지정보과
- 수업연한(3→2년제) 조정 : 2개과
 - 컴퓨터정보과, 정보통신과학과
- 모집정원 조정 : 4개과 (총정원 520명내)
 - 디지털디자인 40→60명 (20)
 - 컴퓨터정보과 64→60 (△4)
 - 정보통신과학과 64→40 (△24)
 - 바이오생명정보과 32→40 (8)

○ 08. 03 제11회 입학식(03. 03) - 11개학과 547명(정원의외 27명)

충북과학대학 조직현황

□ 기 구



※ 는 3년제 학과임

- 기 구 : 3과(4담당), 11개 학과, 6부속기관, 1부설기관, 1부설연구소, 4산학협력단
- 부속기관 : 전자계산소, 도서관, 학생생활관, 취업정보센터, 학보사, 방송국
- 부설기관 : 평생교육원
- 부설연구소 : 학생생활연구소
- 산학협력단 : 창업보육센터, 농업정보화지원센터, 산학연컨소시엄센터,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인 력

(2008년 7월 21일 현재)

구분	총계	교 원				사 무 직 원				
		계	학장	교수	조교	계	5급	6급	7급~9급	기능직
정원	66	42	1	30	11	24	1	5	11	7
현원	65	41	1	29	11	24	1	5	11	7
결원	1	1	-	1	-	-	-	-	-	-

※ 별도정원 인력 : 7명(청원경찰 3, 기성회직 4)